

# auri brief.

건축도시공간연구소

No.215 2020.07.30

## 건축·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

심경미 연구위원, 장민영 부연구위원, 이혜원 연구원

### ● 요약

-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장소 중심의 종합적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·관리하고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
- 영주시(2009), 서울시(2012)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고,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9년 7월에는 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
- 2020년 5월 3일 기준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(도 5곳, 특·광역시 5곳, 시·군·구 30곳)으로 이 중 8곳은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만, 10곳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고, 절반 정도가 2019년에 제도를 도입
- 제도 운영에 있어 공무원 인식 부족에 따른 초기 단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, 전담인력 확충 및 실무전담 부서 신설의 어려움,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직 설치와 위상 확립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나타남

### ● 시사점

-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성과 공유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필요
- 여러 유형의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선행사례 발굴 및 공유, 선도모델 구축 필요
-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실행이 어려운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 위상정립 문제, 지원인력 및 전담부서 신설 문제,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문제 등 근본적 한계 극복을 위한 상위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
- 도시 규모별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차별화,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 전문가 관계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

| 주제어 | 민간전문가, 총괄건축가, 총괄계획가, 공공건축가, 건축기본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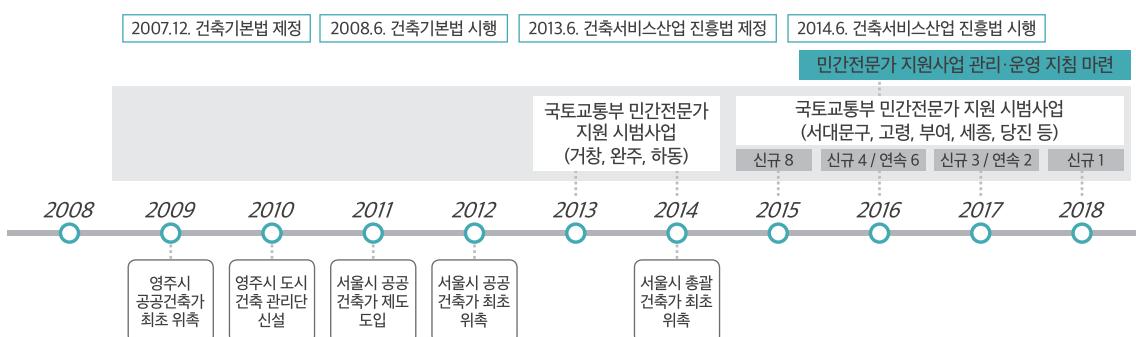
## ① 건축·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

### ●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배경

-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로 각 지역에서 유사 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시설 간 연계 확보의 어려움, 과대 설계나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와 디자인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
- 민간전문가 제도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, 개별 시설물의 소관 부서 간 칸막이식 행정을 연계·조정하고, 부처 또는 부서 중심이 아닌 장소 중심의 종합적인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
  - 민간전문가 제도는 각종 공공사업의 효과적 운영·관리를 위해 전문가 참여-행정의 지원이라는 ‘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’를 토대로 행정에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단계를 강화하고, 발주단계 지원이나 설계 및 시공단계의 품질 확보, 유지·관리의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지원

### ● 민간전문가 제도 추진 과정

- 2007년 12월 「건축기본법」이 제정되면서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(법 제23조), 시행령에는 자격 기준 및 업무범위, 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(시행령 제21조)
- 제도 제정 이후 영주시가 2009년에 국내 최초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, 이후 서울시가 2012년에 공공건축가를, 2014년부터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 중
-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,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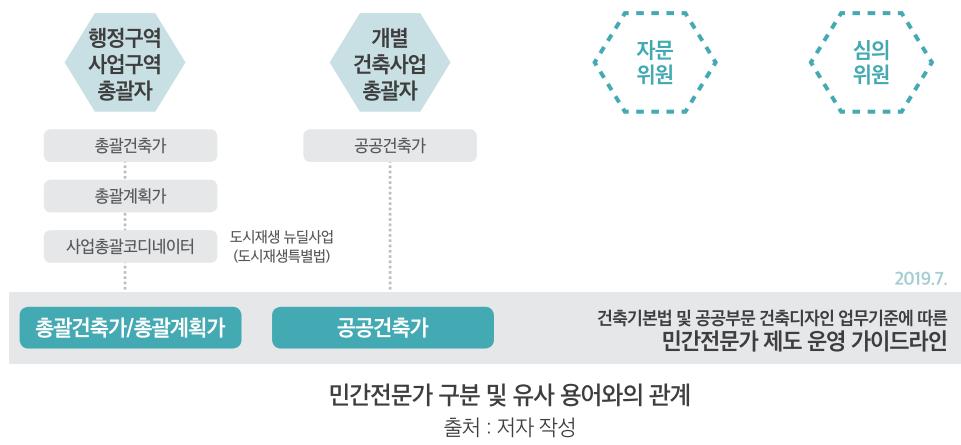


국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운영 연혁

출처 : 심경미 외. (2019). 지역총괄계획이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 연구. 국토교통부. 18 참고 재작성.

## ● 용어의 이해

- 현재 「건축기본법」에 의한 법정용어는 ‘민간전문가’로 통칭되고 있으나, 관련 매뉴얼 및 지자체 조례 등에서 민간전문가를 일컫는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
  - ‘지역총괄계획가’, ‘사업총괄계획가’, ‘분야별 전문가’, ‘총괄건축가’ 및 ‘공공건축가’ 등
-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「건축기본법」 및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, 민간전문가를 일컫는 용어를 ‘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’, ‘공공건축가’로 구분하여 통칭하는 것으로 정리함
  - ‘민간전문가’란 공공기관의 장이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 등의 직명으로 위촉한 건축 및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
  - ‘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’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·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·조정 등 건축·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
  - ‘공공건축가’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부터 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



- 해외에서도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를 일컫는 명칭은 도시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, 명칭 자체보다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

### 네덜란드 도시별 민간전문가 관련 명칭

도시명	명칭	
덴하흐, 아센, 암스텔베인, 메尔斯포르트	Stadsarchitect	도시총괄건축가
엔스헤데, 하를럼	Stadsstedenbouwer	도시마스터빌더
아른헴	Stadsbouwmeester openbare ruimte	공공공간 및 도시마스터빌더
흐로닝겐	Supervisor stedenbouw Stadsstedenbouwer	도시개발 총괄기획자 도시마스터빌더

출처: 심경미 외. (2019).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 연구. 국토교통부. 58-59 참고 재작성.

## ②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<sup>1)</sup>

### ●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- 정부는 2019년 4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이행방안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’을 발표하였고,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어촌뉴딜300사업 등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·활용할 수 있도록 함
  - 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’에 따르면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,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본방향을 제시
  -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지침 수립 및 자문 등을 위해 공공건축가를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였으며, 지자체와 현장 상황에 따라 센터장이 겸무할 수 있도록 함
-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
  -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작성된 ‘건축·도시디자인 및 경관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(2013)’이 있으며, 2015년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‘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·운영 가이드라인(안)’이 매년 작성되고 있음
  - 지원사업의 가이드라인은 사업대상지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되어 있고 모니터링 기관의 사업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지 외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-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수정·보완하여 공공기관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「건축기본법」 및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(이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)’을 마련(2019.7)

### ●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요

-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총론(1장),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업무 및 운영(2장), 공공건축가의 업무 및 운영(3장),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및 공공기관 준비사항(4장)으로 구성됨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(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조)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적용함

1) 국토교통부(2019). 「건축기본법」 및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재작성

## ●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- 민간전문가의 구분 및 참여 권장 대상사업 명시
  - 앞의 용어 정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, 민간전문가의 유형 내지는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, 본 가이드라인에서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,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통칭 하는 것으로 정리함
  - 민간전문가는 공공기관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기획·설계, 개선사업에 참여를 권장하고, 건축·도시 관련 법령<sup>2)</sup>에 의한 사업,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 사업 및 시범사업,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참여 사업을 명시함
-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업무에 대해 시·군·구 단위와 도·특·광역시 단위로 구분하여 구체화
  - 시·군·구 단위와 도·특·광역시 단위에서의 업무와 역할은 대부분 동일하나, 시·군·구 단위에서는 장소 기반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하나의 업무로 포함하여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·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을 담당
  - 도·특·광역시 단위에서는 관할 지역 내에서 민간전문가를 운영하지 않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공건축가를 파견하는 운영지원 업무가 중요할 수 있으며, 시·군·구 단위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지원도 중요
- 공공건축가의 업무에 대해 구체화
  -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단계 참여·자문, 주요 공공사업의 조정·자문, 공공건축물 설계업무, 그밖에 각종 계획 및 사업 관련 심의·심사, 다양한 가이드 라인 및 조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

### 시·군·구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업무

구분		주요내용
1	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·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자체 여건 분석, 비전 및 미래상 수립 자문</li> <li>- 건축·도시 관련 사업/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</li> <li>-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자문, 공모사업(안) 검토 및 자문</li> </ul>
2	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지(종점추진권역) 검토 및 선정</li> <li>- 통합마스터플랜 사업추진체계 및 과업지시서 검토, 계획 수립 총괄</li> </ul>
3	건축·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중요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</li> <li>- 사업 간 통합적 연계 또는 협력적 관계 구축 마련 및 운영 참여</li> <li>- 건축·도시 관련 법정/비법정계획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, 조정</li> <li>- 건축, 도시, 디자인, SOC 사업 유형별 관련 기준, 지침, 조례 검토 및 자문 ※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총괄</li> </ul>
4	사업발주방식 검토·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주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, 개선 및 구축, 자문</li> <li>-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및 사업 관리·자문</li> <li>-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대상 확대: 설계비 1.0억 원 이상(2020.1.16. 시행)</li> </ul>

2) 「건축기본법」, 「건축법」, 「경관법」, 「도시개발법」, 「택지개발촉진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하천법」, 「도로법」, 「농어촌정비법」 등

구분		주요내용
5	공공건축가 운영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마련 지원, 선정 등에 참여</li> <li>-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</li> </ul>
6	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, 선진사례 답사 등 주민 교육</li> </ul>
7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자체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및 지자체장의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</li> </ul>

출처 : 국토교통부. (2019). 「건축기본법」 및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. 3.

#### 도·특·광역시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업무

구분		주요내용
1	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·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자체 여건 분석, 비전 및 미래상 수립 자문</li> <li>- 건축·도시 관련 사업/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</li> </ul>
2	건축·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·군·구와 동일</li> </ul>
3	사업발주방식 검토·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·군·구와 동일</li> </ul>
4	공공건축가 운영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건축가 추천 및 운영 지원(교부금 지급 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체계 마련)</li> <li>-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</li> <li>-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지원</li> <li>-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공공건축가 추천 및 파견 지원</li> <li>- 공공건축가 교육 지원</li> </ul>
5	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</li> <li>- 시·군·구 단위 민간전문가 제도 및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실시</li> <li>- 시·군·구 민간전문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</li> </ul>
6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자체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및 지자체장의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</li> </ul>

출처 : 국토교통부. (2019). 「건축기본법」 및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. 4.

#### 공공건축가의 업무

구분		주요내용
1	건축·도시 기획업무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</li> <li>-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기획단계 자문</li> </ul>
2	건축·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조정, 자문</li> <li>-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, 자문</li> <li>- 국가정책사업(어촌뉴딜300사업, 생활SOC사업 등)의 조정, 자문</li> <li>- 각종 정비계획* 수립의 조정, 자문</li> </ul>
3	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</li> <li>※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참여할 수 없음</li> </ul>
4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 및 심사 참여</li> <li>-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 마련에 참여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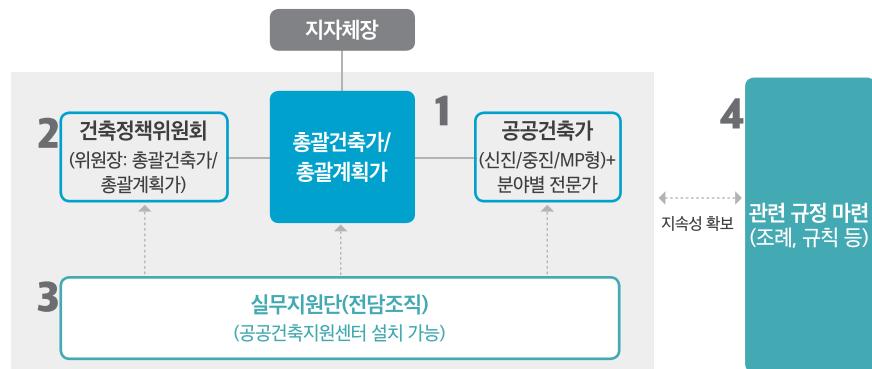
\*주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도시개발법」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·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·도시 개발사업 등

출처 : 국토교통부. (2019). 「건축기본법」 및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. 7.

#### •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와 지자체 준비사항을 명시

-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기본으로 건축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, 실무지원단의 구성,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,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
- (민간전문가 위촉)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를 부(副)기관장급 지위로 위촉, 공공건축가는 1인 이상 위촉을 권장하며 필요시 공공건축가 외 특정 분야 전문가의 별도 위촉 가능

- (건축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)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
- (실무지원조직 구성)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가 업무 지원, 지역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, 설계공모 운영 등을 위한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
- (관련 규정 마련)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'건축 기본조례'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



출처: 심경미. (2019).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.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. 국가건축정책위원회. 32.

### ③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및 한계

#### ● 지자체 운영 현황<sup>3)</sup> 및 규모: 총 4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(2020.5.3. 기준)

- 도·특·광역시가 10곳(약 59%), 시·군·구가 30곳(약 13%)으로 총 40곳에서 운영
-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모두 운영하는 지자체는 22곳,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만 운영하는 지자체가 8곳,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지자체 10곳
  - 도(5곳) : 충남, 전북, 경남, 제주, 경북(경북은 총괄건축가만 운영)
  - 특·광역시(5곳): 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인천(인천은 공공건축가만 운영)
  - 시·군(25곳): 경기 5곳, 강원 2곳, 충남 2곳, 전북 1곳, 전남 1곳, 경북 4곳, 경남 10곳
  - 구(5곳): 서울 서대문구, 서울 강동구, 서울 은평구, 인천 서구, 대구 수성구

3) 「건축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가(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, 공공건축가)를 대상으로 함. 참고로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서울시 교육청, 한국철도공사 3개 공공기관 및 어촌뉴딜300사업,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같은 부처 개별 프로젝트에서도 민간전문가가 활용되고 있음.

-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총 796명
  -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 30명, 공공건축가 766명<sup>4)</sup>으로, 이 중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가 265명,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가 42명

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(2020.5.31. 기준) (단위: 개)

구분	전체 지자체 수*	민간전문가 운영 지자체 수			총괄건축가 +공공건축가	총괄건축가만 운영	공공건축가만 운영
도·특·광역시	17	10 (약 59%)	도	5	4	1	0
			특·광역시	5	4	0	1
시·군·구	226	30 (약 13%)	시·군	25	13	4	8
			구	5	1	3	1
합계	-	40	-	40	22	8	10

\*주 : 행정안전부. (2019).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. 4 참고.

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(2020.5.31. 기준)

구분	전체 지자체 수(개)	민간전문가 운영 지자체 수(개)			총괄건축가 인원(명)	공공건축가 인원 (명)	합계(명)
도·특·광역시	17	10 (약 59%)	도	5	5	141	146
			특·광역시	5	4	430	434
시·군·구	226	30 (약 13%)	시·군	25	17	168	185
			구	5	4	27	31
합계	-	40	-	40	30	766	796

\*주 : 행정안전부. (2019).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. 4 참고.

## ● 도입 시기 및 운영 기간: 절반 정도가 도입한 지 1년 미만

- 가장 초기기에 본 제도를 도입한 경북 영주시(2009)는 10년 이상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(2012)도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
- 서울 서대문구(2015)와 충남 부여군(2016)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을 계기로 본 제도를 도입하여, 이후 자체 예산으로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-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,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전체의 절반(약 52.5%)을 차지하고 있어, 본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미만인 곳이 많은 상황

4) 서울시 마을건축가는 총 248명(마을건축가 MP 25명, 마을건축가 223명)이 위촉되었으나 현재 구 단위에서의 운영 및 역할 등이 정립 중인 관계로 제외하였음. 이 가운데 98명은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중복됨.

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기간 현황(2020.5.31. 기준)

(단위: 개)

구분	1년 이상	6개월~1년 미만	6개월 미만	합계
도	2	2	1	5
특·광역시	4	0	1	5
시·군	9	10	6	25
구	4	0	1	5
합계	19(47.5%)	12(30.0%)	9(22.5%)	40(100.0%)

출처 : 저자 작성

### ● 제도적 기반(조례) 마련 현황: 19곳 조례 제정, 21곳 내부 방침 마련

- 민간전문가를 위촉·운영하고 있는 40개 지자체 중 19개소에서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신설(10)하였거나, 기존의 관련 조례를 개정(9)
  - 나머지 21곳은 지자체 내부 방침으로 제도를 운영 중
  - 제도적 기반 마련은 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기간과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, 최근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

지자체별 조례 등 마련 현황(2020.5.31. 기준)

(단위: 개)

구분	제도 마련		제도 없음	합계
	조례 제정	기존 조례 일부 개정		
도	-	3	3	5
특·광역시	-	5	5	5
시·군	8	1	9	25
구	2	-	2	5
합계	10	9	19	40

출처 : 저자 작성

### ● 일부 지자체는 특정 분야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 운영

- 서울 강동구의 경우 도시경관 분야 총괄 역할을 하는 ‘도시경관총괄기획가’를, 전북 전주시는 재생 분야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‘지역재생 총괄계획가’를 운영 중
  - 전북 전주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거지재생 총괄계획가를 위촉(2019.7.)하였고, 기존 역할에 도시재생 분야의 업무를 더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재생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020년 5월 지역재생 총괄계획가로 위촉

### ● 제도 운영의 한계점 및 최근 여건 변화

-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에 따라 초기 단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 발생

-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, 공공건축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외에 건축 및 도시 관련 타 부서와 업무내용 공유와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나, 본 제도에 대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초기 단계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
  - 해당 지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 대상 워크숍·포럼 등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자체장이 주최하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논의
  - 국토교통부,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공무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돋기 위한 정기교육,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
- 담당부서 지원인력의 업무부담 가중과 종합적·체계적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실무전담부서 신설의 어려움 상존
- 제도 운영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 기록 및 관리, 모니터링, 수당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,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공건축가 참여사업과 활동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와 모니터링, DB 구축,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
  - 그밖에도 지역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,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자문 요청에 관한 사항, 공공건축 설계공모,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 및 공유에 관한 사항 등 업무가 추가됨
  -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는 미비한 상황으로,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
  - 본 가이드라인 등에서 전담인력 확충 또는 실무지원조직 신설을 권장하고 있으나, 현장에서 담당공무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또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
-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조직 설치 및 위상 확립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의 어려움
-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가 건축 및 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, 조정, 자문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위원회인 시·도(광역) 및 시·군·구(기초)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로 위촉하도록 권장하여 그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
  - 그러나 「건축기본법」상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음
  -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위상에 대해서는 부자치단체장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, 현재 대부분 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상도 직급 및 행정체계, 보수체계 등에 있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한계 발생
- 최근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, 지역공공건축지원 센터와 민간전문가 간의 관계 설정,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 마련에 대한 새로운 과제 대두

-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개정(2019.12.19. 시행)으로 건축기획 심의기구로 ‘공공건축 심의위원회’를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, 건축기획 사전검토 업무를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‘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’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
-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가 공공건축사업 기획단계 강화, 발주방식 체계화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소관부서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소관부서(건축과)가 동일할 필요
- 최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부서가 건축과 외에 도시재생, 도시디자인, 도시 경관 관련 부서 등 다양해지고 있음
-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부서와 공공건축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부서가 다를 경우 지역 건축정책 및 사업기획 내용의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연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
- 도, 특·광역시, 시·군, 구 단위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업무 수행을 위한 선행 참고사례 또는 세부적인 가이드 부재
  -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해 처음으로 시·군·구 및 도, 특·광역시로 구분하여 이전보다 세부화하여 명시
  - 그러나 최근 많은 지역에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와 특·광역시의 업무내용의 차별화, 시·군·구에서도 도시 규모별 업무범위 및 내용의 차별화 필요성 등이 제기됨
  - 본 제도를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지자체가 서울특별시와 영주시 2곳으로 한정되어 있어, 여러 유형과 다양한 규모의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선행사례 및 선도모델 부족
  - 특히 안정화된 모델보다는 초기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체계, 안정화되기까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해결 과정, 구체적 업무수행 활동과 내용 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

## ④ 시사점

### ●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성과 공유·홍보 지속

- 지자체 차원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관련 공무원 및 지역 건축사들 대상의 워크숍, 포럼 등을 개최, 제도의 취지와 개념, 타 지역 사례 등을 공유
- 국토교통부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국가 차원에서는 공무원·건축사 대상 정례교육, 광역 단위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
- 관련 정보 및 성과 공유, 애로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관련 설명자료 및 우수사례집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발간·배포

### ● 여러 유형의 선행사례 발굴 및 선도모델 구축, 제시

- 최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,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지자체들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참고할 만한 선행사례를 발굴하고, 특히 제도 운영 초기 단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선행사례 구축
- 발굴한 선행사례들을 분석하여 도시 규모별 또는 지역 특성별로 참고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구축하여 제시

### ● 제도 운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한계점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

-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위상 정립 문제, 지원인력 및 전담부서 신설 문제,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문제 등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위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

### ●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

-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, 지역공공 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 간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 제시
  -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가 관계 설정,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등
- 도시 규모별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세부화하여 가이드라인 개정
  - 총괄건축가/총괄계획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도 단위와 특·광역시 단위로 구별하여 제시하고, 시·군·구 단위에서도 도시 규모별로 업무내용을 차별화하여 제시

심경미 연구위원 (044-417-9654, kmisim@auri.re.kr)

장민영 부연구위원 (044-417-9870, myjang@auri.re.kr)

이혜원 연구원 (044-417-9825, hwlee@auri.re.kr)